

(통권 22-6호)

예산·재정정책 정보

본 보고서는 충청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최근 국내연구기관 등의 경제동향, 국가 및 지방재정 연구동향 및 법령 제·개정 사항 등을 파악하여 요약·정리한 자료입니다.

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(Tel : 635-5205)

2022. 7. .



충청남도의회사무처
(예산정책담당관)

분 야 별 목 차		
분 야	제 목	페이지
I. 경제	1. 충남경제-월간 충남경제6월호	1
II. 재정	2. 지방의 복지비 부담 실태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위한 정책 제언	3
	3.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 징수체계를 위한 제언	5
	4.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동향	7
	5.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	10
	6.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의 쟁점과 과제	12
III. 정책	7. 장애인 대상 비대면 진료의 효율적 운영체계 연구	13
	8. 새 정부의 초·중등교육정책에 따른 시도교육청 정책의 추진방향	15
	9. AI 기술,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?	18
	10. 전차선로 지지설비 검사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	20
IV. 법률 제·개정	11.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정교부금)	22

1. 충남경제 - 월간 충남경제 6월호

- **(경기 종합)** 러-우크라이나 전쟁, 국제유가 상승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현상의 장기화가 중간재 수출, 산업생산 둔화 조짐
 - 특히 전자부품 등 주요 제조업의 출하 감소와 자본재 수입감소, 원자재 가격부담 및 특정 품목의 수급 불안 등으로 **향후 경기는 당분간 둔화 예상**
 - 다만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과 함께 하반기 자동차·스마트폰의 신제품 출시, 중국의 봉쇄 완화 등 상방요인도 예측되면서 향후 경기 방향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
- **(기업 경기)** 도내 제조기업은 수출, 재고, 설비 등의 부문에서 전월과 비슷한 체감경기를 보였으나, 그 외 생산, 신규수주, 매출, 내수판매 등의 부문에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. 특히 지속되는 **공급망 문제와 물가 상승영향으로 원자재구입가격 체감 및 전망치가 크게 상승**한 모습
 - 비제조업 경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 이후 소폭의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, 당월 다시금 하락하며 위축상태를 지속하는 모습
- **(산업 생산)** 1차금속 제조업을 제외한 자동차, 전자부품, 화학제품, 석유정제품 제조업 등 **핵심제조업 대다수 생산 감소·조정세**를 보이는 모습
 - 자동차(부품 수급 부족, 내수판매 감소), 전자부품(3개월 연속 증가 이후 당월 소폭의 조정세, 생산제품 전환), 화학제품 및 석유정제품(코로나19 수혜로 인한 기저효과 종료, 재고 조정)

주로 원자재 수급 불안, 생산 제품 전환, 재고 조정 등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며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필요

- **(수출입)** 5월 충남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6.7% 증가한 95억 4,100만 불로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, 반도체, 철강판,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 대다수가 호조세를 보이며 성장을 견인(다만, 국제유가 및 철강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영향도 일부 포함) 수입 부문 역시 원유, 석탄, 석유제품 등 원자재·에너지 등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글로벌 가격 상승 영향으로 수입 금액 역시 증가세를 지속, 특히 이로 인해 전국 무역수지의 경우 2개월 연속적자를 나타냈으나, 충남은 **주력 품목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소폭 둔화 정도**에 그친 모습
- **(고용)** 경제활동참가율, 고용률 등 **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며 긍정적인 흐름**
 - 다만 기저효과 종료에 따른 회복세 둔화 가능성, 불확실한 대내외 상황과 더불어 산업/연령/종사상지위 등 분야별 취약계층의 고용문제는 여전히 잔존
- **(물가)**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되며 **충남 소비자물가지수 6%대 큰 폭 상승**
 - 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 추진 등 국제유가 상승 압력 지속되면서 석유류 및 기타 공업제품 가격 상승세 지속
 - 또한 원재료비 상승 영향으로 외식 물가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, 운영경비 상승으로 그 외 개인서비스 물가 또한 상승

출처 : 충남연구원(2022. 6)

2. 지방의 복지비 부담 실태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위한 정책제언

○ (현황) 사회복지 지출액 및 비중 확대

- 2020년 결산 기준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액은 77.9조로 세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%를 넘어 선 32.5%를 기록
- 대전(42.3%), 부산(42.2%), 광주(40.1%)는 사회복지비중이 40%를 초과

○ (현금성 복지) 의무지출 국고보조사업, 자체사업 모두 현금성 복지지출이 빠르게 상승

- (국고보조사업) 전액 현금성 지출로만 이루어진 의무지출 지방 대응비는 생계급여, 해산장제급여, 기초연금, 아동수당지급,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(기초),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사업으로 현금성 지출의 지방대응비는 2012년 이후 연평균 13.2%로 빠르게 증가
- (자체사업) 무상교육,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자체사업 부문에서의 현금성 지출 또한 확대

○ (새 정부 복지정책) 윤석열 정부의 복지공약 중 구체적 지원단가나 대상이 규정된 복지사업을 기초로 추계한 결과 지방비 부담은 최소 약 2조원 가까이 증가

- 지원범위나 지원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기초연금, 생계·주거급여,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단순 지원대상 확대만 고려하더라도 대응지방비는 약 2조원 증가

- 이는 2022년 국고보조 의무지출에 대한 대응지방비 11.7조원의 16.5%에 해당
 - 위 논의는 2021년 지방비 기준으로 추산한 것으로, 앞으로 부모급여 등의 논의가 구체화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수 증가까지 반영하면 지방비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**(정책제언)** 사회복지부문에서의 **지방자치단체 역할 재정립** 필요
- 지방대응비 인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인상 등 자체세입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운용이 바람직
 - 현금성 지출사업은 자칫 일회성 선심성 사업에 그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성 있는 복지사업을 위해 노력
 - 사업의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

출처 : 한국지방세연구원(2022. 7)

3.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 징수체계를 위한 제언

- **납세자 친화적인 징수법령**으로의 체계개선이 필요함
 - 지방세징수법은 지방세수입의 확보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므로 조세채권자인 과세권자의 시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,
 - 조세징수법령은 과세권자에게 강력한 권한을 위임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실현 절차에서도 납세자 권익이 적정하게 보장되는 것이 조세 정의에 부합함
 - 특히 취득세,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의 중요성과 복잡성이 증가하는 현행 지방세체계를 볼 때 **납세자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징수법령체계**로의 지속적인 개선이 바람직

- 납세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**편제 재구성**
 - 현행 체납처분 장(제3장)은 각 규정이 논리적 연관성 없이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성이 떨어지므로 체납처분 장의 편제를 시간적·절차적 흐름에 따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규정의 체계성 및 납세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해야 함
 - 현행 징수(제2장)와 체납처분(제3장)체계를 신고납부, 납부고지 등(제2장)과 제3장(강제징수)체계로 개편하며, 「지방세기본법」상의 납세담보 절을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이관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
 - 지방세 징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총칙에서 분리하여 보칙 장에 이관시키는 것이 타당함

○ 목적규정 내 **납세자 권익 보호 문언 추가**

- 목적규정(제1조)에 “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”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본법의 기본목적인 지방재정수입의 확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편의와 이익을 적정하게 보장한다는 지방세징수법의 기본방향을 명시하여야 함

○ 납세자가 **알기 쉬운 용어**로 정비

- 정의규정(제2조)에 주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야 함 (‘체납’과 ‘납부기한’ 등)
- 개념의 실질을 살피 납세자 유형에 따라 서로 달리 쓰이는 표현을 통일하여야 함 (납세고지와 납부통지, 독촉과 최고 등)

출처 : 한국지방세연구원(2022. 6)

4.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동향

○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논의

- 내국세의 20.79%와 교육세로 결정되는 현행 교부금 산정방식에 대한 개편 의견으로는 **소득 증가·물가 상승·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**으로 개편하는 의견, **수요에 기반한 산정방식**으로 개편하는 의견 등이 있음
- **소득 증가·물가 상승·학령인구 변화를 반영**하는 방식은 교부금이 실질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확대되는 현행 내국세 20.79% 결정 방식은 합리적 자원배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며, 개편에 따른 재정절감 규모를 2021~2060년 1,046.8~1,144.6조원 수준으로 전망
- **교육수요에 기반한 산정방식**은 교육수요 국제비교를 위한 지표로 ‘정부 총예산 대비 유치중등 교육재정 비중’, ‘학생 1인당 유치중등 교육재정 지출액’을 사용
- 반면, 고교학점제, 그린스마트 미래학교, 과밀학급 해소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신규수요가 창출되고 있으므로 현행 내국세·교육세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

○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관계의 재구조화 논의

-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협력 강화 방안 마련, 공동사업비·교육지원특별회계 등을 신설하여 고등교육 등 국가 교육재정 수요 재원으로 활용, 장기적으로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통합추진 등에 대한 의견이 있음

- 그 외 단기과제로 지방재정-교육재정 간 예결산 및 성과관리 효과성 제고, 지자체·교육청 간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 등, 중기과제로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역할 강화 등을 추진하고, 장기과제로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 간 통폐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
- 정부가 발표(2022.6.16)한 「**2022년 경제정책발표**」에 **교부금 제도 개선 검토** 계획 포함
 - 5대 부분 구조개혁 중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확충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
 - 학령인구 감소,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여 교육 부문간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해 현재 내국세의 20.79% 및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며 유초중등 교육에만 투자 가능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 개편
- 현행 교부금 결정방식 개편 논의의 출발점은 **예산 편성의 경직성에 따른 국가재정 전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한계, 내국세 변동성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운용 계획 수립의 어려움** 발생 가능성 등이 배경
 - 내국세 연동방식을 개편하는 것은 교부금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
- 다양한 교부금 제도 대안을 마련하여 각 대안이 교육투자 수혜

자에게 미치는 효과, 재정절감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필요

- 특정 사회경제적인 변수 연동 방식 이외에도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‘중앙정부가 정원을 통제하는 교원 인건비 등은 별도로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식’, ‘예산사업 편성 방식’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논의필요

출처 : 국회예산정책처(2022. 6)

5.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

-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.81명으로 전 세계 최저수준이고,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.4%를 차지하고 있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가 감소하여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에 처해 있음
- 2021년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개정을 통해 2022년에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의 문제에 대응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(기초자치단체 75%, 광역자치단체 25%)를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 제도임
-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방재정 제도가 있었지만, **지방소멸의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처음**이라는 의의가 있음
- 분석 결과,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과 관련해 몇 가지 쟁점 있음
 - 한시적인 기금 제도가 가지는 한계로, **10년 이상의 장기 사업을 발굴하기 어렵고** 연례적인 소규모 반복사업을 실시하기 용이한 구조임
 - 기금의 운용 성과를 매년 분석하므로 중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매년 성과가 도출되는 **근시안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에 집중**
 - 인구감소지역·관심지역이 지방소멸 대응에 집중할 유인책이 부족한 실정임
- (과제) 유사한 성격의 재원을 연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점사업을 추진하여 **규모의 경제를 실현**할 수 있을 것임

-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결과에 따른 **증장기적 후속 조치로 맞춤형 컨설팅, 성공사례·실패사례 공유 시스템**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임
- 인구감소지역·관심지역이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가 필요할 것임

출처 : 국회입법조사처(2022. 7)

6.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의 쟁점과 과제

- (개요) 지자체 해당 지역의 기관구성 형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됨으로써 지역에 맞는 기관구성 형태로 다양화되는 현상
 - 기관구성 형태: 단체장에 대한 직선제 여부, 집행기관-의결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

- 주요 쟁점
 - 사회적 요구가 있는가?, 국내의 경우 미미하여 **공론화** 필요
 -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는가? **공감대**가 형성되지 못할 경우,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회귀 우려
 - 다양화의 효과는 있는가? 비용효과보다는 **지방분권 고도화 등 정책적 효과** 예상

- 향후의 과제
 -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에 대한 **사회적 공론화와 다양한 의견수렴**을 통해 수용성 높은 법제도 설계 필요

출처 : 지방행정연구원(2022. 6)

7. 장애인 대상 비대면 진료의 효율적 운영체계 연구

- 장애인 이동 관련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49.0%는 집 밖 활동 시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으며, 이 중 13.7%는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하고, 집 밖 활동이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1.1%로 **전체 장애인의 약 절반 정도가 불편함을 토로**
- 그동안 수행되었던 공공분야의 대면 의료서비스 제도 현황을 조사하여 비대면 진료 도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, **실현 가능한 비대면 진료 모델을 도출**하고자 함
- 기존 비대면 관련 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비대면 진료 모델 초안을 구성하고, 의료계 전문가 및 장애인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영역으로 모델을 확장 그 결과, 장애인의 **만성질환 관리**를 위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모델과 장애인의 **건강 관리 모니터링** 비대면 진료 서비스 모델, **정신건강 관리**를 위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모델 등 3개의 모델을 최종안으로 제시
 - 의료계 단체 및 의료기관과의 논의를 통하여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
 - 최근 다수의 의료단체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으며, 일부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, 이들과 논의를 통하여 시범사업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
 - 정부 및 정책결정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시범사업을 구성하고, 행정을 투입하는 절차가 필요함

- **비대면 진료 목적이 주가 아닌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**
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정책결정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
것으로 판단됨
-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시범사업에 참여시킬 유인책이 필요함
-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뿐 아니라 제도의 취지와 목적, 사업
수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장애인이 인지할 수
있도록 해야 함

출처 : 한국보건의료연구원(2022. 5)

8. 새 정부의 초·중등교육정책에 따른 시도교육청 정책의 추진방향

- 윤석열 정부의 교육관련 정책은 5가지 국정과제 중 초·중등교육 분야 정책의 **‘100만 디지털 인재양성’, ‘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’, ‘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’** 등을 발표하였고,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교육과정 국정과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초점을 맞추어 제안하고자 함

- 디지털·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·신기술 분야의 핵심 인재로 적기에 양성하고,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SW·AI 및 디지털 교육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**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**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함
 - 기술을 익히는 교육을 넘어 인간에 대한 존엄, 자연과의 공존 등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**올바른 인재상 정립** 필요
 - 단순히 SW·AI 활용 기술을 가르치는 역량 뿐 아니라,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, 창의력, 문제해결력, 협업능력 등을 함양하도록 **역량중심의 교사 교육 프로그램 도입** 필요
 - 단순한 기술을 익히는 교육을 넘어 문제를 발견하고 협업, 사고력, 창의력, 윤리적 판단을 겸비한 문제해결 과정에 SW·AI를 활용한 **미래 역량을 기르는 교육** 필요
 - 스마트학습환경 구축, 디지털 교수·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등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**인프라 구축** 필요

-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혁신으로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 개개인을 위한 국가 책임의 학습지원과 진로·경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**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**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
 - 교육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한 **대입제도 개편 상황**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입준비와 교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별 진로·진학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원 필요
 - 2022 교육과정 개정에 준비에 필요한 디지털 기초소양강화 및 정보교육 확대, 진로연계학기 도입, 학교자율시간 도입 등을 담고 있는 **2022 교육과정 개정에 미리 준비**할 필요가 있으며 국정 과제에서 제시한 ‘(가칭) 온라인고교’신설, 고교체제 개편 등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 또한 마련 필요
 -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**학습격차 해소**, 정서·심리지원 등 **학생 맞춤형 회복지원, 사교육 경감** 등을 위한 **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** 필요
 - 개인이 원하는 정보는 노출되지 않도록 AI기반 학습, 학습·경력 관리 플랫폼 구축 등에 있어 **학생 개인의 정보 관리에 대한 대책** 마련 필요

-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의 **국가 책임을 강화**하고 소외계층이 없는 맞춤형 교육과 전 국민 평생 학습 지원 등 **교육격차 해소**를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학교의 역할에 대비한 정책 추진 필요

-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돌봄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**유치원돌봄과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시간 확대 대비 필요**
 - **돌봄 확대와 초등 전일제 교육 등 새로운 정책 추진**으로 영향 받는 이해관계자 상호 간 또는 이해관계자와 해당 기관 간에 **발생하는 이해충돌 대비 필요**
 - 코로나19 이후 학교의 역할에 대한 요구에 비례하여 교직원 업무의 증가에 따른 교육복지사, 상담사 등 인적 확충으로 **학교 구성원 역할에 대한 재구조화 필요**
- 정책이 실행되는 곳은 학교이며,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은 학교의 교직원이고, **교육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임**
-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교직원의 소진을 해소하기 위해 정당한 권한과 보상을 확대하고 늘어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를 재구성하거나 직무자원을 늘리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

출처 : 한국교육개발원(2022. 6)

9. AI 기술,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?

- AI는 예측력이 뛰어나 공공부문의 다양한 영역에서 강력한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대상 선별 및 사후관리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
 - 국내에서 최근 등장하고 있는 AI 활용 공공서비스는 주로 단순 반복 업무를 기술적으로 대체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
 - 기존의 정책 성과관리가 결과를 확인하는 사후평가에 그쳤다면, AI의 도입은 **정책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한 정보를 활용**하는 등 **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방식**으로의 전환을 의미

-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지원대상 선별에 AI를 적용한 결과, AI는 **지원 이후의 성과 예측에 효율적으로 활용**될 수 있으며, 지원의 효과가 낮은 대상을 분별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크게 제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
 -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를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자금 지원사업에 기업 정보를 활용하여 머신러닝을 적용한 결과, 지원 이후의 성장 예측에 유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
 - 이를 **지원 효과가 높은 대상을 분별하는 데 활용**할 경우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

- 설문조사 결과, 공공부문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정책 체계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① 정책정보의 표준화 및 부처 간 연계 미비 ② 공공부문의 기술 활용 전문성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음

- 공공부문의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교육, 의료, 치안, 국방,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효과성 향상을 **국가적 차원에서 모색이 필요함**
 - 공공부문 각 분야에서 AI 도입 시 해당 기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으며, 지원 수단에는 시스템, 데이터 플랫폼, 보안, 조직 컨설팅, 교육 등을 포함할 수 있음
 - 세부 전략으로는 ① 데이터 관리체계 일원화, ② 정책정보의 효율적 교류를 위한 정부 업무체계 정비, ③ 신뢰 기반 공공-민간 파트너십 구축이 요구됨
 - 정책의 수립, 집행, 평가 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AI가 정책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고, 사업 목적의 명확한 설정, 데이터의 선별 및 연계, 시스템의 구축 및 보안성 확보, 투명한 운영방식 마련 등 **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마련할 필요**가 있음

출처 : KDI 한국개발연구원(2022. 6)

10. 전차선로 지지설비 검사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

○ ‘전차선로 지지설비 상태 영상을 고해상도로 획득하여 검사하는 기술’을 교통신기술 제56호로 지정하여 **철도사고 위험도 및 해외 기술 의존도 절감 도모**

- 원활한 열차 운영을 위해 전차선로 지지설비*의 상시 관리가 필요하나 기존에는 인력에 의한 점검방식으로 수해하여 다수의 유지보수 인력이 필요하거나 해외의 검측장비를 수입하는 어려움 존재

* 전력 공급을 위해 선로를 따라 설치한 전차선 등을 지지하는 시설물(가동브래킷, 급전선 지지장치 등)

· 전차선의 마모·재료불량, 기온 변화 등에 의해 전차선의 형태가 변형되면 선로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, 원활한 열차 운영을 위해 전차선로 지지설비의 상시 관리 필요

· 지지설비 상태 검사를 위해 단전 등 별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야간에 많은 인력이 오랜 시간 동안 점검해야하고, 인명사고 위험 및 오검측률이 높은 편

· 수입장비가 기존의 장비체계와 호환이 되지 않거나 장비에 장애 발생 시 수리에 오랜기간 소요 및 운행중단으로 인한 손실비용 발생

- 철도차량(검측차, 영업열차)에 검사장비를 탑재하여 운행중 촬영을 통해 전차선로 지지설비의 변형·파손·탈락 등 결함을 자동 검사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검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철도사고 예방

- 열차에 탑재된 검사장비를 통해 열차 운행중 전차선로 지지설비를 고속(0.00001초) 및 고해상도(0.4mm/pixel)카메라로 촬영하고, 딥러닝 이미지 분석을 통해 지지설비의 결함정보를 실시간 제공
- 영업열차 운행 중에도 **검사장비로 상시 검사가 가능**하여 **효율적인 유지보수**가 가능하고/ **인명사고 위험 및 오검측률 최소화**
-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검사 기술을 국산화하여 향후 수입 대체효과 및 해외 진출 기대

출처 :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(2022. 6)

11.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
- 현행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·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일정기준에 따라 **조정교부금**을 배분하고 있음.
- 경마, 경륜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 역시 시·도세로서 그중 일부가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,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·군 및 자치구에서 주거침해, 도박중독, 교육상 문제, 교통혼잡, 주차문제,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므로,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에 관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.
- 이에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마투표권 등에 대해 시·군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·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려는 것임(안 제29조 및 제29조의2).

출처 : 국회의안정보